

제 4 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제249조 (계약 목적)

- ① 시설과 수급자(입소자),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약' (이하 "계약" 이라 한다)을 체결 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
-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
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

제250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251조 (계약해지)

-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

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
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번 이상 지체했을 경우
4.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5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6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252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4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8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9.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

1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6. 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·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제253조 (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수급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“을”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2. “을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② 입소자의 의무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
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5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장기요양 입소비용 산출내역(2022년)

<div> <div>등급</div> <div>부담률</div> </div>	1등급 (74,850원)	2등급 (69,450원)	3,4,5등급 (64,040원)	1등급 (74,850원)	2등급 (69,450원)	3,4,5등급 (64,040원)	1등급 (74,850원)	2등급 (69,450원)	3,4,5등급 (64,040원)
	29일 이용시			30일 이용시			31일 이용시		
본인부담금(20%)	434,130	402,810	371,432	449,100	416,700	384,240	464,070	430,590	397,048
본인부담금(12%)	260,478	241,686	222,859	269,460	250,020	230,544	278,442	258,354	238,229
본인부담금(8%)	173,652	161,124	148,573	179,640	166,680	153,696	185,628	172,236	158,819
식 대 (2,500원*3식)	217,500	217,500	217,500	225,000	225,000	225,000	232,500	232,500	232,500
간식(1,000*1식)	29,000	29,000	29,000	30,000	30,000	30,000	31,000	31,000	31,000
합 계(20%)	680,630	649,310	617,930	704,100	671,700	639,240	727,570	694,090	660,550
합 계(12%)	506,980	488,190	469,360	524,460	505,020	485,540	541,940	521,850	501,730
합 계(8%)	420,150	407,620	395,070	434,640	421,680	408,700	449,130	435,740	422,320
상급병실료 (1일 10,000)	290,000	290,000	290,000	300,000	300,000	300,000	310,000	310,000	310,000
상급병실료 합계(20%)	970,630	939,310	907,930	1,004,100	971,700	939,240	1,037,570	1,004,090	970,550
상급병실료 합계(12%)	796,980	778,190	759,360	824,460	805,020	785,540	851,940	831,850	811,730
상급병실료 합계(8%)	710,150	697,620	685,070	734,640	721,680	708,700	759,130	745,740	732,320
☞ 병원 이용시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 청구									